



인권의 개념



- **인권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전(vision)입니다. 이미 사람인데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에서 앞의 사람은 자연 상태의 사람을 의미한다면 ‘사람답게’라는 것은 자연 상태의 사람 중에서도 존엄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 존재 자체로는 존엄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존엄성은 ‘이미 주어졌거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존엄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인권의 이해



I . 노인인권의 개념

- 노인인권은 '노후를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 받지 않을 권리'이다.
- 노인인권은 노인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로서
좁은 의미로는 노인이 학대 내지 차별 받지 않을 권리부터,
넓은 의미로는 연령차별 없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권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다(권중돈, 2012).



노인인권의 이해



II. 노인인권의 영역 - 1. 노인인권 영역 일반

영역	인권항목	세부적 권리
인간존엄권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천부적 자유와 존엄,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 강제노동과 노예 제도의 금지, 고문금지, 법 앞에서의 평등, 차별 및 학대금지
자유권	신체자유권	불법체포 및 구속으로부터의 자유, 불법강제 노역으로부터의 자유
	사생활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거의 불가침, 거주 및 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정신적자유권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개인적 및 집단적 표현의 자유
	경제적자유권	재산권의 보장, 직업선택의 자유
	정치적자유권	정보접근권, 정치활동의 자유, 참정권



노인인권의 이해



II. 노인인권의 영역 - 1. 노인인권 영역 일반

영역	인권항목	세부적 권리
사회권	경제권	연금수급권, 기초생활보장권, 노후경제생활 교육받을 권리 등
	노동권	은퇴준비 교육권, 경제활동 참여권(취·창업, 노인일자리사업), 적정 보수를 받을 권리, 적정 노동환경 요구권 등
	주거권	주거환경보장권(주택소유, 주거환경 개선, 임대보증금 지원 등)
	건강권	○ 건강증진권(건강교육, 건강상담, 건강교실 등) ○ 위생 및 영양권(이·미용, 목욕, 세탁서비스, 경로식당/ 중식서비스, 밑반찬·도시락 배달, 푸드뱅크 등) ○ 건강급여권(의료이용,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등) ○ 재활서비스 이용권(양·한방진료, 재활문제 해결: 물리치료, 작업치료, 운동재활, ADL 훈련 등) ○ 요양보호권(방문요양, 노인돌봄서비스, 주간·야간·단기보호, 장제서비스), 시설입소권(노인요양시설 등)
	평생교육권	노인교실, 노인복지관 등의 교육프로그램 참여권(한글교실, 외국어교실, 교양교실, 정보화교육, 역사교실, 예능교실, 등)
	문화생활권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의 여가프로그램 참여권(음악, 미술, 원예교실, 다도교실, 문화교실, 운동, 바둑·장기 등)
	사회참여권	자원봉사활동 참여권, 동아리·클럽 활동 참여권, 교통편의 서비스 이용권 등
	가족유지권	가족과의 교류, 가족의 부양을 받을 권리 등
	소통권	가족, 이웃, 친구, 비노인층 등 관계망과의 교류권
	법 절차적 권리	청원권, 재판의 청구권, 형사보상 청구권, 국가배상 청구권, 범죄피해자의 구조 청구권

출처 : 권중돈(2016), 『노인복지론(6판)』. 학지사.



노인인권의 이해



II. 노인인권의 영역 - 2. 시설생활노인 인권 영역

시설생활 노인의 기본적 권리

- 시설 운영 및 생활관련 정보를 제공 받고 입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안락한 가정과 같은 환경과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 부당한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건강한 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 시설 내·외부 활동 및 사회적(종교, 정치 등) 관계에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이성교재, 성생활, 기호품 사용에 관한 자기 결정의 권리
- 고충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퇴소를 결정하고 퇴소 후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
- 시설 종사자와 동료 노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권리



노인인권의 이해



II. 노인인권의 영역 - 2. 시설생활노인 인권 영역

단계	서비스	인권영역
입소 이전	시설정보에 대한 접근	거주 이전과 선택의 자유권, 시설에 관한 정보접근권
	입소상담	의사표현의 자유권, 시설운영 및 입소 절차에 관한 정보접근권, 개인 정보 및 사생활 보호권
	입소결정과 입소계약	입소시설 선택과 입소 여부의 자기결정권, 입소계약 내용에 대한 정보접근 및 공정한 입소계약을 맺을 권리
입소 초기	시설생활안내	시설 공간과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생활규칙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동의할 권리
	입소사정 및 서비스목표설정	욕구사정을 위한 자유로운 표현과 정보제공의 권리, 서비스 목표설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서비스 계획 수립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참여와 자기결정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초기 적응지원	생활불편 해결을 위한 조치를 받을 권리, 서비스 이용의 자유권



노인인권의 이해



II. 노인인권의 영역 - 2. 시설생활노인 인권 영역

단계	서비스	인권영역
입소 생활	시설생활의 기본 처우	종사자와 동료노인으로 부터 인격적 존중을 받을 권리, 개인적 생활스타일을 유지하고 영위할 권리,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
	의료 및 재활서비스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안전한 재활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일상생활지원	질 높은 영양 및 급식서비스를 받을 권리, 개인적 선호에 따른 의복착용의 권리,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세심하고 안전한 목욕서비스를 받을 권리, 적절한 배변서비스를 받을 권리, 외출 및 이동서비스를 받을 권리
	여가, 문화, 경제, 노동, 정치, 종교활동	공평한 여가문화생활서비스를 받을 권리, 여가문화생활서비스의 선택권, 지역사회 여가문화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개인소유물 관리 및 소비활동의 권리, 노동활동을 선택하고 거부할 권리, 정치적 의사표현과 투표의 자유권,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생활환경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
	의사소통 및 고충처리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소통의 권리, 자유로운 정보통신 생활의 권리, 고충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특수욕구 및 개별적욕구	개인의 사적 생활과 특별한 욕구에 대해 요구할 권리, 공평한 서비스를 누릴 권리



노인인권의 이해



II. 노인인권의 영역 - 2. 시설생활노인 인권 영역

단계	서비스	인권영역
입소 생활	치매 등 특수질환	치매 등 특정질환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고 평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 서비스 내용과 과정에 대한 알 권리,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치료 및 약물처방에 대한 자기결정의 권리
	서비스 선택과 변경	서비스에 대해 알고 선택할 권리, 서비스의 변경을 요구할 권리
	서비스 이용 지원	가족과 유대관계를 유지할 권리, 지역사회와 교류할 권리, 외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권리, 동료노인으로부터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종사자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	종사자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
퇴소	퇴소상담	의사표현의 자유권, 퇴소의 자기결정권, 부당한 사유로 퇴소당하지 않을 권리
	서비스 의뢰 및 추후 서비스	전원이나 입원에 대한 의사표현과 자기결정권, 지역 사회와 다른 시설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권, 서비스 내역에 대한 알권리와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 서비스의 지속성을 보장받을 권리

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14). 노인인권 길라잡이. pp.45-47.



노인인권의 이해



III. 노인인권 관련 법령 및 제도

1. 노인인권 관련 주요 법령

노인인권 관련 법령 및 제도는 제반 사회보장, 즉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 보험,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법령과 제도와 연관성을 지니며, 노인복지법을 비롯한 서비스 관련 법률이 연관된다.

1)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제1조)으로 한다.
- 노인은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으며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법2조).
- 노인복지법에서는 제6조의3 인권교육, 제23조 노인사회참여 지원, 제25조 생업지원, 제26조 경로우대, 제27조 건강진단 등, 제27조의2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제27조의3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제27조의4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노인인권의 이해



III. 노인인권 관련 법령 및 제도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한다.
- 이 법에서 인권 침해행위가 심각할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규정(제37조)하여 소극적 인권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노인인권 감수성



I. 인권감수성의 정의

인권을 옹호하려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심리적 과정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 ① **인권감수성**(상황을 인권관련 상황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는 과정)
- ② **인권에 대한 판단력**(어떤 행동이 인권과 관련하여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과정)
- ③ **인권에 대한 동기화**(다른 가치와 비교하여 인권이라는 가치를 우선시하는 과정)
- ④ **인권옹호 행동과 관련된 성격**(인권옹호 행동을 끝까지 고 나갈 수 있는 실행과정)

인권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 태도가 아니라 인권 관련 상황을 해석하고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을 다룬다. 또한 인권감수성은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의 처지를 이해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외경심을 높이는 감성이며,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소외된 이웃들의 처지에서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것이라 정의하였다.(문용린, 2002)

따라서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헌법이나 세계인권선언, 유엔인권협약 등에 담겨진 인권의 의미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껴가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노인인권 감수성



II. 인권감수성 구성요소

보커(Volker, 1984)의 검사를 토대로 하여 인권감수성을 구성하는 요소를 크게 세 가지 즉, 상황 지각, 결과 지각, 책임 지각으로 나누었다.

- ① **상황지각능력** - 중요한 사실에 대한 지각을 말하며 사람이 개인, 집단, 기관, 사회 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인지하고, 인과 관계를 명확히 추론하는 능력 (국가인권위원회, 2002).
- ② **결과지각능력** - 타인의 정서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예측하는 지각능력이다.
- ③ **책임지각능력** - 인간이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의 인권이슈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 행동을 실천하는 지각능력이다. 책임지각에서는 도덕적 책임, 윤리적 책임, 법률적 책임이 있다. 개인적 책임에 대한 지각능력으로, 인권행동에 대한 책임을 자신과 관련하여 지각하고 이를 실제적인 행동으로 실행하는 실천적 의지를 의미한다(김충희, 2004).



노인인권 감수성



III. 노인차별과 노인인권감수성

1. 노인차별

노인차별은 흔히 '에이지즘'이라고도 지칭하며, 노인배타주의, 연령차별주의, 고령자 차별주의로 노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취급하는 명백한 행동으로, 이는 대부분의 경우 편견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였다.

노인차별은 노인에 대한 기피, 노인에 대한 고용차별, 매체와 관련한 부정적 노인 이미지의 고착화 등 우리 사회 노인문제의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박종우, 1999).



노인인권 감수성



★노인차별의 원인 세가지

- ① **사회적 요인** :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과정에서 교육기회의 제한으로 인한 지식과 기술이 낙후되어 생산성이 낮은 고령자를 노동시장에서 분리시키고 이러한 분리와 함께 부의 분배에서도 주변 지위로 밀려나게 되었다.
- ② **문화적 또는 이념적 요인** : 젊은이 중심의 문화가 확산되고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며, 사회경제적 경쟁을 중시함에 따라 노인이 갖고 있는 보수적 가치관과 문화는 현대사회의 가치지향이나 문화와는 일치하지 않게 됨으로 차별이 심화되었다.
- ③ **심리·정서적요인** : 완고성, 경직성, 우울성향의 증가, 과거에 대한 회상의 증가와 같은 심리적 노화로 인하여 노인이 지닌 장애는 부각 되는 반면 노인이 지닌 장점은 무시되게 되고 이로 인해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더욱 강화 되게 되었다. 특히 언론매체에서 노인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사회의 노인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노인의 인권과 노인차별은 상호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노인의 존엄성과 품위를 유지하며 건강하고 만족스런 삶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이슈이며 사회 관심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인권 실천



I. 노인인권과 노인복지 실천의 관계

- 노인복지는 노인복지정책과 실천을 통해 노인의 욕구 충족과 문제해결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헌신적이었고, 노인복지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이념적 지향점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홀했다.
 - 일반적으로 노인복지 제도의 발달 단계는 첫째, 자선과 구제, 둘째, 노인문제의 해결, 셋째, 노인의 욕구충족 단계를 거치게 되며 마지막으로 노인권리보장 또는 인권보호단계로 진행된다.
 - 노인복지정책과 실천이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인권관점의 실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노인복지에 인권관점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노인복지종사자에게 또 다른 역할이나 업무가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 단, 노인을 '의존적이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던 사고'에서 '완전한 권리를 가진 주체로 규정하는 사고'로의 전환이 노인복지 종사자에게 요구된다.
- 2018년에는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 신고의무자 직군 등은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 등과 같이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더불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노인인권교육 이수를 필수화 하였다.



노인인권 실천



II. 노인인권 침해 영역과 범위

- 노인복지 생활시설은 노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가정과 같은 보호와 돌봄을 제공하는 노인인권의 주요 실천의 장이기도 하지만 한편, 지리적·공간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분리된 시설거주 노인들은 노인인권침해 또는 학대가 발생할 여지도 함께 보유한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 노인 및 보호자들은 돌봄 역할을 공적으로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노인인권보장의 기대가 높고 시설의 문제점을 파악·보완하여 좀 더 나은 노인인권 실천을 요구한다.

■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분류한 노인복지 생활시설 노인 인권영역은 다음과 같이 크게 5개 영역, 총 9개 하위영역을 두었다.

- ① 건강권 - 적절한 영양상태 제공 / 신체억제 최소화를 위한 노력 / 욕창 발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노력
- ② 존엄권 - 위생관리의 적절성 / 존중 받을 권리 / 교류 및 소통, 종교의 자유
- ③ 안전권 - 비상벨 설치의 적절성
- ④ 자기결정권 - 프로그램 참여의 자율성 보장
- ⑤ 권리구제- 고충처리 절차



노인인권 실천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영역>

영역	하위영역	개별항목
건강권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의료, 간호, 물리치료, 작업치료, ADL 훈련 및 기타 재활요법 등
	생활서비스를 받을 권리	의복, 청소, 목욕, 대소변, 양치, 용모단장, 전염병, 식중독 관리 등
	영양·급식서비스를 받을 권리	급식, 간식, 특별식 등
주거권	안락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시설의 쾌적성, 편의성, 접근성, 안전성, 집단 활동실, 생활실 환경 등
	안전한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	실종, 시설내 안전사고, 화재 등
인간존엄성과 경제 노동권	인격권과 평등권	평등, 행복추구 등
	학대 받지 않을 권리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성적학대, 경제적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경제·노동권	개인금품의 관리, 유류품 처리, 강제노동의 금지
정치·종교, 문화생활권	정치 및 종교적 자유권	투표참여, 종교활동 참여 등
	문화생활권	음악, 미술, 레크리에이션 등 문화생활 참여 등



노인인권 실천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영역>

영역	하위영역	개별항목
교류소통권	가족 및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권리	외출, 외박, 외부활동참여, 면회, 서비스정보 등
	동료노인에게 존중 받을 권리	동료노인의 사생활 보호, 존엄한 대우, 집단 따돌림, 폭언과 폭행 등
	시설종사자를 존중할 권리	종사자의 인권보호 등
자기결정권	입.퇴소 과정에서의 자기결정권	요양급여와 시설생활에 대한 정보제공, 생활규범 설명 등
	서비스 선택.변경에서의 자기결정권	요양급여 정보, 서비스 정보제공과 선택, 서비스 변경, 가족통지 등
	정보통신생활의 권리	우편, 전화, 인터넷 이용 등
	생활고충 및 불평처리에 관한 권리	생활상담, 사례관리, 불평 및 건의절차 등
	이성교제, 성생활, 기호품 권리	성생활, 이성교제, 음주, 흡연 등



노인인권 실천



III. 노인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법

1. 노인인권에 대한 합의성 도출

-우리나라 사정에 적합한 노인인권 개념, 인권영역을 규범화 하고,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행동 원칙 또는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법 및 제도적 기반구축

-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노인복지 서비스는 관련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3. 노인의 인권의식 전환과 주체적 참여

-노인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극적으로 인권에 대해 설명하고 노인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고 찾을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확산되어야 한다.

4. 시민과 노인복지 종사자의 인권에 대한 인식 강화

-인권관점에 근거한 노인복지실천을 위해서는 노인복지종사자는 물론 일반시민의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켜야 한다.

5. 인권실천의 확대

-노인복지 실천에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문제해결과 욕구충족보다는 노인의 역량강화와 인권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6. 노인권익 옹호와 인권 네트워크 구축

-노인복지 종사자는 노인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인지하게 되는 노인들의 권리 요구가 정부의 정책개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인과 정부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 해야 한다.



여러분이 어르신들의 인권지킴이입니다.